

현행	개정
<p>1. ~ 4. (생략) ② (생략)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생략) ② 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p>	<p>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생략) ② ----- ----- ----- ----- -----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개정 공포·시행 안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9일자로 개정(대통령령 제 19009호)·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장은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년 1회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제15조제3항).

따라서, 공공기관은 8월 19일부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현행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점검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점검 사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제도연구실 884-1863]